

일본 사법제도의 개혁과 변리사직역 문제



윤선희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목 차

1. 들어가며
2. 현행 일본 변리사제도
 - (1) 수입금지신청절차 대리권(신법 제4조2항1호)
 - (2) 공업소유권 관련 분쟁의 중재절차 및 화해절차의 대리권
 - (3) 공업소유권 기술상의 노하우의 매매계약의 체결 대리권(신법 제4조 3항)
 - (4) 공업소유권의 침해소송에 있어 보좌인으로서의 신문권(신법 제5조)
3. 日本 司法制度改革審議會
 - (1) 민사사법제도의 개혁
4. 변리사업무영역의 확대 및 전망
 - 1) 민사사법의 국제화
 - 2) 변호사(법조인)의 국제화
5. 법조인구의 확대
6.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혁
 - 1) 새 법조인 양성제도의 정비
 - 2) 사법시험
 - 3) 인접법률 전문직종의 활용
 - 4) 재판소조사관 제도의 확충
7. 司改委에 대한 일본 특허청의 대응
8. 끝으로

1. 들어가며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국가중심의 법률에서 국제화되어 가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구조의 변화(국제화, 복잡고도화, 다양화 등)로 국내외 사회정세도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사법분야에서도 분쟁의 형태의 변화와 더불어 재판의 신속성, 전문성, 다양성, 국제화 등이 요구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찍부터 로스쿨제도를 도입을 검토하다가 보류상태에 있었습니다만 몇일전 서울대학교는 다시 로스쿨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서울대가 로스쿨로 하면 다른 대학들도 따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도 법률시장의 개방과 더불어 사법전반에 걸쳐 많은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2001년 7월 1일 内閣官房長官室내에 『사법제도 개혁추진준비실』을 만들어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갔다고 한다¹⁾. 본 사법제도개혁심의회는 “21세기 일본 사회에서 사법이 해야 할 역할을 명확히 하여 국민이 보다 이용하기 쉬운 사법제

1) 朝日新聞, 2001년 7월 2일

<http://www.asahi.com/nation/update/0701/024.html>

도의 실현,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관여, 법조인의 위상과 그 기능의 충실향화 기타 사법제도의 개혁과 기반 정비에 필요한 기본적 시책에 대하여 조사 심의하는”(사법제도개혁심의회설치법 <1999년 법률제68호> 제2조제1항) 것을 목적으로 하여 1999년 7월 내각 하에 설치되었다. 특히 여기서는 일본 사법제도개혁심의회의 보고의견 서²⁾(금년 6월 12일)의 내용 중 변호사의 업무영

역과 변리사의 업무영역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현행 일본 변리사제도

최근 일본의 변리사 시험 합격률 약 4.9%이고 합격자 평균 연령은 약 34세이다. 변리사 업무범

미국	특허변호사	약 16,000명
	변리사	약 4,000명
일본	변호사(변리사 등록자)	약 300명
	변리사	약 4,300명

	현 행	개 정 후
업무범위	특허청에 대한 절차대리 중심 ※ 지적재산 전문 서비스 중심으로 ※ 지적재산(산업재산권, 반도체 회로배치, 저작물, 기술상비밀)거래계약의 증개·대리·상담업무의 명확화 ※ 산업재산권, 반도체회로배치, 저작물, 특정부정경쟁에 관한 사건의 재판외 분쟁처리업무(증개사건의 절차대리)추가 ※ 변리사의 독점업무(특허료납부절차등) 즉, 개방 변리사독점업무 일부감축 ※ 세관에의 부정상품 수입금지신청에 있어서 세관장에게 인정절차대리업무 추가 ※ 변리사에 대하여 특허침해소송의 소송대리권의 부여에 대해서는 사법개혁심의회에서 검토중	
변리사시험	산업재산권에 관한 지식중시형 시험 변리사수를 늘리기 위해 변리사 시험제도 발분적 개혁 *출제형식은 5지택일식으로 하고 출제수는 60문으로 하여 시험시간은 3.5시간으로 한다. 출제분비는 대개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상표법:조약:저작권법+부정경쟁방지법은 2:1:1:1:1로 한다. *과목면제를 인정하는 공적자격자 ①변리사 시험의 선택과목과 대응하는 구분의 기술사 ②사법서사 ③행정서사 ④변리사시험의 선택과목에 대응하는 분야에서 박사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⑤약제사 ⑥일반건축사 ⑦전기주임기술자(제1종, 제2종) ⑧전기통신주임기술자 ⑨정보처리기술자시험합격자(소정의 구분 시험)* ⑩사법시험에 합격한 자 또한 기타의 공적자격이나 직력, 해외의 자격 등에 대한 면제에 대해서는 면제에 대한 필요 등을 감안하면서 계속해서 검토하기로 한다.	
경영체제	경영체제의 제한	변리사 사무소의 법인화등 규제완화에 의한 유연한 서비스체제 실현
경쟁제한적 규정	변리사활동의 제한	변리사 등의 자주적 활동범위 확대 ※변리사 보수액표 근거규정 삭제 ※광고제한 원칙 철회(회칙)

2) <http://www.kantei.go.jp/jp/sihouseido/report/ikensyo/index.html>

위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변리사를 양적 확대를 도모하는 한편 시험내용을 개정(단답식 시험과목 추가, 논문식 시험 선택과목수削減 등), 일정의 자격을 가진 자에게 대해 시험의一部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일본 신변리사법에 있어서 변화된 변리사 업무의 내용

신변리사법(이하 신법이라 함)은 구변리사법에 있어서 공업소유권에 관한 권리등록시 절차대리인에 더하여 기타의 지적소유권의 절차대리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관여할 수 있게 되어 권리의 옹호를 보다 용이하게 한 것이다. 새로 추가된 업무의 개략에 대해 열거해 본다.

(1) 수입금지신청절차 대리권(신법 제4조2 항1호)

변리사는 관세정율법에 따른 수입금지신청의 절차대리와 침해물품인정절차에 관한 절차의 대리를 행할 수 있게 되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변리사는 공업소유권의 권리의 창설에 깊이 관여하고 권리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고 감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외제조품 등의 일본에의 수입에 대해서는 수입금지신청의 절차대리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 당해 제품에 대하여 일본국내에서 공업소유권을 가지는 권리자 스스로가 신청 절차를 행하거나 변호사가 전기 신청의 절차대리를 하였으나, 전기와 같은 수입금지신청은 수입품이 권리침해인 것을 정확히 인식하지 않으면 되려 혼란을 일으키고 결과적으로 손실 등으로 확대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수입금지신청의 실무가 원활하게 행해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수입품에 관련된 지적소유권에 대해 전문

지식을 가진 변리사의 절차대리를 인정하게 한 것이다.

(2) 공업소유권관련 분쟁의 중재절차 및 화해절차의 대리권(신법 제4조2항2호)

변리사는 공업소유권관계의 분쟁의 중재절차의 대리인 또는 중재에 있어서의 화해절차의 대리인도 될 수 있게 했으므로 재판사건이 되기 이전에 중재, 화해에 의해 문제 해결을 꾀하는 경우의 절차대리를 할 수 있다.

(3) 공업소유권 기술상의 노하우의 매매계약의 체결 대리권(신법 제4조3항)

종래 계약에 관한 대리, 매개, 상담 등을 일체 변호사의 전업이었으나 신변리사법에서는 공업소유권 기술상의 노하우의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 매개, 상담 등을 할 수 있다. (단, 2002년 4월 27일 이후 시행).

(4) 공업소유권의 침해소송에 있어 보좌인으로서의 신문권(신법 제5조)

공업소유권의 침해소송에 대해서는 종래 보좌인으로서 출정하여 진술하고 있으나, 신변리사법에 의해 보좌인으로서 신문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기술사항에 대한 소송활동이 한단계 더 원활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다.

이외에도 경영 등의 규제완화, 사무소의 법인화와 변리사의 활동범위의 확대, 사무수수료의 규제 철폐, 윤리와 책임에 대한 명확화, 연수의 의무화 등이 입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었으나, 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3. 日本 司法制度改革審議會

본 심의회는 내외의 사회·경제 정세가 크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서 사법의 역할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고 사법제도의 기능을 충실히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을 감안하여 다음의 세 가지 점을 기본적인 방침으로 하여 제반 시책을 강구함으로써 일본의 사법이 그 역할을 완전하게 다할 수 있게 하고 또한 자유롭고 공정한 사회의 형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실행해야 한다.

첫째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사법제도”가 되게 하기 위하여, 사법제도를 더욱 이용하기 쉽고, 알기 쉽고, 의뢰한 보람이 있는 것으로 한다.

국민이 보다 이용하기 쉽고, 알기 쉽고, 의뢰한 보람이 있는 사법이 되도록 국민이 사법에 쉽게 접근하게 하는 동시에 더욱 공정하고 적정·신속한 심리를 하여 실제로 효과적인 사건 해결이 가능한 제도를 구축한다.

민사사법에 대해서는 국민이 이용자로서 용이하게 사법에 억세스할 수 있고, 다양한 요구에 부응한 적정·신속하고 실효적인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

먼저 소송사건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적정·신속하고 실효적인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심리의 내용을 충실히 하고 현재의 심리기간을 대략 반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기 위하여 심리계획을 정하기 위한 협의를 의무화하고 계획심리를 추진하며 증거수집 절차를 확충하는 동시에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사건에 대하여 감정제도의 개선을 도모하는 외에 전문가가 소송절차에 참가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

특히 지적재산권 관련소송에 대해서는 도쿄·오사카 양 지방재판소 전문부의 처리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실질적으로 특허재판소로서 기능하게

한다.

둘째로, “사법제도를 지탱하는 법조인의 위상”을 개혁하여 양과 질 모두 풍부한 전문직으로서의 법조인을 확보한다.

법조인구에 대해서는 2004년에는 현행 사법시험 합격자수 1,500명을 달성한 다음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의 정비상황 등을 주시하면서 2010년경에는 새 사법시험의 합격자수를 연간 3,000명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조인 양성제도에 대해서는 21세기 사법을 맡기에 어울리는 질 높은 법조인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법시험이라는 “점”에 의한 선발이 아니라 법학교육, 사법시험, 사법연수를 유기적으로 연계시킨 “프로세스”로서의 법조인 양성제도를 정비하도록 하고 그 중핵으로서 법조인 양성으로 특화한 대학원(이하 “법과대학원”이라 한다)을 둔다.

셋째로, “국민적 기반의 확립”을 위하여 국민이 소송절차에 참가하는 제도의 도입 등으로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인다.

사법의 중핵을 이루는 소송절차에 대한 새로운 참가제도로서 형사소송 사건의 일부를 대상으로 널리 일반 국민이 재판관과 함께 책임을 분담하면서 협동하여 재판내용의 결정에 주체적·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 민사소송절차에 대해서는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전문가가 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여하여 재판관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또 검찰심사회의 일정한 의결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 인사소송의 이관에 따르는 가정 재판소의 기능을 충실히 하는 일환으로서 참여원 제도를 확충하는 것 등 기존의 참가제도에 대해서도 확충한다. 나아가 재판관 임명절차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시키는 제도나 재판소, 검찰청, 변호사회의 운영 등에 대하여 국민의 의사를 더욱

반영시키는 구조를 도입한다. 기본법제의 정비 등 알기 쉬운 사법의 실현, 사법교육의 충실, 사법에 관한 정보공개의 추진 등 이러한 사법참가를 실효 있게 하기 위한 조건정비를 추진한다.

(1) 민사사법제도의 개혁

민사재판 제도에 대해서는 먼저 적정·신속하고 실효적인 사법구제라는 관점에서는 민사재판을 충실·신속화하는 것, 향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소송 등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사건, 노동관계 사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것 등이 과제가 된다.

또한 재판소에 대한 억세스는 후술하는 변호사에 대한 억세스와 더불어 사법에 대한 억세스라는 과제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1996년 법률 제109호로 제정되어 1998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민사소송법(이하 “新 민사소송법”이라 한다)에 의해 소액소송의 도입 등 재판소에 대한 억세스를 용이하게 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으나 여전히 이용자의 비용부담의 경감, 민사법률부조의 확충, 이용상담창구의 충실 등 재판소의 편리성 향상, 피해구제의 실효화 등 재판소에 대한 억세스 확충을 위한 과제가 적지 않다.

그리고 요구에 부응하여 다양한 분쟁해결수단을 선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재판외 분쟁해결수단(ADR)에 대해서도 그 확충·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과제이다.

더욱이 헌법이 규정하는 삼권분립 내지 억제·균형 시스템 속에서 종전에 비해 사법이 맡아야 할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사법의 행정에 대한 점검기능의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a. 민사재판의 충실·신속화

민사재판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이용하기 쉽고 알기 쉬운 것으로 하기 위하여 新민사소송법이 제정되어 소액소송 등 재판소에 대한 억세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고 또 심리의 충실·신속화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실시되어 왔다.

그와 같은 심리의 확충·신속화를 도모하는 방법으로서는 예를 들면 쟁점 및 증거의 정리절차의 정비, 집중증거조사의 규정 신설, 석명제도의 개정, 隨時 제출주의에서 適時 제출주의로의 전환, 증거수집 절차의 확충(문서제출명령의 확충, 당사자 조회제도의 도입 등. 또 공문서 제출명령에 관한 개정법안은 제151회 국회(2001년)에 제출되어 있음) 등을 꼽을 수 있다. 또 민사소송 규칙에서는 진행협의기일의 신설 외에 대규모 소송에 관하여 심리계획을 정하기 위한 협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 결과 민사소송의 심리기간은 전체적으로 단축되고 있으며, 지방재판소 제1심 민사소송사건 전체의 평균 심리기간에 대하여 보면 9.2개월(1999년)이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다투어야 하기 때문에 중인소환 등 인증조사를 한 사건의 평균 심리기간은 20.5개월(1999년)에 이르고 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심리의 충실을 더욱 도모하고 민사소송 사건 전체(인증조사 사건에 한한다)의 심리기간(1999년에 20.5개월)을 대략 반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다음의 방법들을 실시해야 한다.

a) 계획심리의 추진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에 대하여 심리계획을 정하기 위한 협의를 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절차의 초기 단계에서 재판소와 양 당사자와의 협의에 의거하여 심리의 終期를 전망한 심리계획을 정하고 그에 따라 심리를 실시하는 계획심리를 더욱

추진해야 한다.

b) 증거수집절차의 확충

訴 제기 전의 시기를 포함하여 당사자가 조기에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수단을 확충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독일법상의 독립증거조사(소 제기 전에도 법적 이익이 있는 한 증거보전의 목적을 요건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에 의한 감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 상대방에게 제소를 예고하는 통지를 한 경우에 일정한 증거수집 방법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포함하여 새로운 방법을 검토하고 도입해야 한다. 그 때 증거 소지자 측의 권리 확보와 남용에 따르는 폐해의 우려에도 배려할 필요가 있다.

c) 인적기반의 확충

심리의 충실을 도모하면서 민사소송 사건의 심리기간을 반감하기 위해서는 법조계의 인적 기반을 확충함으로써 기일의 간격을 단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하여 변호사 인구를 대폭 증가시키는 것, 변호사사무소의 법인화·공동화를 추진함으로써 변호사의 집무태세를 충실·강화하는 동시에 재판관 및 재판소 관계 직원의 대폭 증원 등 재판소의 인적 체제를 충실·강화해야 한다.

또한 간이한 소송을 신속히 처리하는 동시에 재판소의 한정된 인적·물적 자원을 복잡·고도한 사건에 집중시켜 전체적으로 효율성을 높인다는 관점에서 지방재판소에서 소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통상의 소송절차와는 별도로 간이 신속한 처리를 가능케 하는 재판절차를 도입해야 하느냐의 여부에 대해서는 장래의 과제로서 계속 검토 해야 한다.

b.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사건에 대한 대응 강화

과학기술의 혁신, 사회·경제관계의 고도화·국제화에 따라 민사분쟁 중에서도 그 해결에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사건(지적재산권 관계 사건, 의료관계 사건, 건축관계 사건, 금융관계 사건 등)이 증가 일로에 있다. 이들 분쟁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는 전문가의 적절한 협력을 얻지 못하면 적정한 판단을 내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따금 절차가 지체되는 일이 생긴다. 의료관련소송 사건(민사 통상 제1심)의 경우 평균 심리기간은 34.6개월(1999년 대강의 수)로 다른 사건에 비해 매우 긴 것이 실정이다. 여러 가지 형태에 의한 전문가의 분쟁해결 절차에 대한 관여를 확보하여 충실한 심리와 신속한 절차로 이러한 사건에 대처하고 국민이 실효적인 사법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현대 민사사법의 중요하고 긴요한 과제이다.

그래서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사건에 대해서도 심리기간(의료 관계 소송사건에서는 1999년에 34.6개월)을 대략 반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민사재판의 충실·신속화에 관하여 기술한 계획심리의 추진, 증거수집 절차의 확충 외에 다음의 방법들을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방법 등을 원활히 실시하고 의료·건축 관련 분쟁의 예방, 사건의 적정·신속한 해결을 실현해 가기 위해서는 관계 기관(관계 부처, 재판소를 포함한다)의 협력·연대가 불가결하며 향후 이를 더욱 강화할 것이 요망된다.

a) 전문위원 제도의 도입

현행법상 소송절차에서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감정, 재판소 조사관 제도가 있는데 불과하여 전문가 관여의 형태는 한정적이다.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소송에서는 절차의 조기 단계부터 전문가가 관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각종 전문 영역에 비법조인 전문가가 전

문위원이 되어 그 분야의 전문·기술적 견지에서 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여하여 재판관을 지원하는 새로운 소송절차에 참가하는 제도(전문 위원제도;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면 쟁점정리의 지원, 화해의 담당·보조,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문제점에 관한 조사·의견 진술, 증거조사에 관한 관여)에 대하여 선임방법이나 절차에 대한 관여방법에 재판소의 중립·공평성을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배려하면서(예를 들면, 절차를 투명화하는 것 등) 각자의 전문성의 종류에 따라 개별적으로 도입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의료 관련사건으로의 도입에 대해서는 환자측·의사측 쌍방에서 보아 공정·중립이라 할 수 있는 전문가를 확보할 수 있는지, 전문위원이 재판관의 심증 형성과정에 불투명한 형태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을 충분히 감안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b) 감정제도의 개선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소송의 충실·신속화를 도모하려면 전통적 제도인 감정의 활용이 불가결 하지만 실무상 그 사건에 적절한 감정인을 찾아내 감정을 맡기는 것이 곤란하다고 한다. 또한 감정을 맡겼다 해도 감정에 장기간을 요하여 그것이 종종 소송 지연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감정인 명부의 정비, 전문가 단체와의 연대, 최고 재판소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의료관련 소송위원회, 건축관련 소송위원회의 신설 등 감정인 선임 프로세스를 원활히 하는 것을 포함하여 감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c) 법조인의 전문성 강화

이상과 같은 전문가의 활용에 추가하여 법조인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변호사사무소의 법인화·공동화, 재판소에서의 전문

부·집중부의 확충,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혁, 법조인 재교육의 충실을 추진해야 한다.

c. 지적재산권 관련 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강화

a) 종합적인 대응 강화의 필요성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사건에 대하여 충실한 심리와 신속한 절차로 대처하는 것은 현대 민사사법의 중요하고 긴요한 과제이다. 특히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사건의 충실·신속화에 대해서는 각국 모두 지적재산을 둘러싼 국제적 전략의 일부로 여겨 이를 추진하기 위한 각종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일본도 이러한 동향을 감안하여 정부 전체로 임해야 할 중요 과제의 하나로 이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

더불어 도쿄·오사카 양 지방재판소는 지적재산권 관련사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각각 전문부를 두고 이러한 사건 처리에 정통한 재판관, 기술 전문가인 재판소 조사관을 배치하여 전문적 처리 체계를 정비해 왔으나 최근의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사건의 증가에 따라(지방재판소 민사 통상 제1심에 새로 접수된 건수는 1989년의 331건에서 1999년에는 642건으로 늘어났다), 다시 그 전문적 체계를 확충해 왔다(또한 도쿄·오사카 양 고등재판소에서도 전문적 처리체계가 갖추어져 있다). 이와 같은 재판소의 체제 강화의 결과 평균심리기간도 단축되고 있다(지방재판소 민사 통상 제1심에서 심리를 끝낸 사건을 보면 1989년의 29.2개월에서 1999년에는 23.1개월로 단축). 특히 전문적 처리체계를 확충해 온 도쿄·오사카 양 지방재판소의 평균 심리기간은 다른 지방재판소에 비해 짧은 테다가 그 단축경향은 현저하다(도쿄·오사카에서 변호사의 전문화가 진전되고 있는 것도 한 요인일 것이다).

또한, 신 민사소송법이 지적재산권 관련소송사건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 도쿄·오사카 양 지방재판소에 소위 경합관할을 인정한 결과 이러한 소송의 접수사건의 대부분은 양 지방재판소에 제기되도록 되고 있다(특허권의 경우 신 민사소송법 시행 전인 1997년의 66.9%에서 1999년에 84.3%, 2000년에는 87.5%로 증가했고 실용신안의 경우 1997년의 47.1%에서 1999년에 63.9%, 2000년에는 81.4%로 증가했다. 단, 2000년의 수치는 모두 개략적인 숫자)

특허침해 분쟁에 관해서는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조치의 확충을 위하여 1998, 1999년에 특허법을 개정하여 침해액 산정방식의 수정, 計算감정인 제도의 도입 등 손해배상제도의 개혁을 도모하는 동시에 침해행위의 입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문서제출명령의 확충, 積極否認의 특칙 신설 조치를 강구해 두었다. 그렇지만 권리자가 상대방의 대상물건 또는 방법을 특정하여 침해행위가 있었다는 취지를 입증하기는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어 증거수집 절차의 개선 필요성도 지적되고 있다.

b) 종합적인 대응 강화의 구체적 방법

이와 같은 대응에 입각하여 지적재산권 관련소송사건의 가일층의 충실·신속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송절차에 관한 제도적 정비와 아울러 재판소의 집무체제의 정비·강화, 전문화된 재판관, 변호사 등의 인재 육성·강화 등, 지적재산권 관련사건에 관한 인적기반의 강화 등을 도모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구체적으로는 지적재산권 관련소송사건의 심리기간(1999년에 23.1개월)을 대략 반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민사재판의 충실·신속화에 관하여 기술한 계획심리의 추진, 증거수집절차의 확충 외에 다음의 방법을 실시해야 한다.

- 전문성이 강화된 재판관이나 기술전문가인 재판소 조사관의 집중적 투입, 첨단적 기술 분야에도 대응할 수 있는 전문위원제도의 도입,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등에 관한 소송사건에서 상기와 같은 지적재산권 관련소송의 현상을 감안한 도쿄·오사카 양 지방재판소로의 전속관할화(다만 이로써 당사자의 이익을 해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재판소에서도 처리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등에 의해 도쿄·오사카 양 지방재판소 전문부의 전문적 처리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로써 양 지방재판소의 전문부가 실질적으로 “특허재판소”로서 기능하게 된다. 또한 도쿄·오사카 양 고등재판소의 전문적 처리체계의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통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 변리사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하여 변리사의 특허권 등의 침해 소송대리권(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이 되어 있는 사건에 한한다)에 대해서는 신뢰성이 높은 능력담보조치를 강구한 다음 이를 부여해야 한다.
- 법조인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의 적정·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소송절차에 따르지 않는 유연한 해결을 가능케 하는 것도 필요하며, 일본지적재산중재센터(구 공업소유권중재센터)나 특허청(판정제도) 등의 ADR을 확충·활성화하는 동시에 재판소가 사안에 따라 전문성을 가지는 ADR 기관에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칠 수 있는 절차의 정비 등 소송과의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여러 방법을 원활히 실시하고 나아가서는 향후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분쟁해결에

관한 이용자의 요구 등에 정확히 대응하고 분쟁의 예방, 사건의 적정·신속한 해결을 실현해 가기 위해서는 관계기관(관계 부처, 재판소를 포함한다)에 의한 연대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요망된다.

d. 재판소에 대한 이용 확충

a) 이용자의 비용부담 경감

가. 제소 수수료

국민이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려면 제소 수수료(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그 수수료의 액은 소송 목적의 價額(소액)에 따라 순차 가산하여 산출하는 소위 연동제에 의해 정해지고 있다.

현행 연동제 하에서의 제소 수수료는 안건에 따라서는 상당히 고액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용자의 비용부담의 경감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소 수수료에 대해서는 연동제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범위에서 그 低額化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간이재판소의 소액소송사건의 제소 수수료에 대해서는 국민이 보다 이용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정액제의 도입을 포함한 검토를 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나. 변호사보수의 폐소자 부담의 취급

소송 당사자가 그 의뢰한 변호사에게 지불하는 변호사 보수는 폐소당사자 부담의 적용대상이 되는 소송비용에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으며, 소송의 폐소에 관계없이 각자 부담으로 되어 있다 (또한 판례에 의해 불법적인 소송에 대응하기 위하여 변호사에게 위임한 경우 및 불법행위에 의거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를 위하여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경우에는 승소당사자가 지불한 변호사보수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액의 범위 내에서 손해의 일부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변호사 보수의 일부를 폐소당사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소송의 활용을 촉구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역으로 부당하게 이를 위축시키는 경우도 있다. 변호사보수의 폐소자부담 제도는 일률적으로 도입해서는 아니 된다. 이와 같은 기본적 인식에 의거하여 승소하여도 변호사 보수를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을 회피할 수밖에 없었던 당사자에게도 그 부담의 공평을 도모하여 소송을 이용하기 쉽게 한다는 견지에서 일정한 요건 하에 변호사보수의 일부를 소송에 필요한 비용으로 인정하여 폐소자에게 부담 시킬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다만, 동시에 폐소자에게 부담시키는 금액은 승소자가 실제로 변호사에게 지불한 보수 액과 같은 금액이 아니라 그 중 소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부여야 하고 또한 당사자에게 예측 가능한 합리적인 금액으로 해야 한다. 또한 폐소자부담제도가 부당하게 소송의 제기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폐소자부담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이러한 폐소자부담을 도입하지 않는 소송의 범위 및 취급의 방법, 폐소자에게 부담시킬 경우에 부담하게 할 액의 결정방법 등에 대하여 검토해야 한다. 또한 이 검토에 있어서는 소송구조, 법률부조 등의 다른 제도와의 관련이나 변호사보수의 부담 방법에 관한 국민의 이해에도 충분히 배려해야 한다.

다. 소송비용액 확정절차

민사소송에 소요된 비용 중 법이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는 범위의 것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폐소당사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승소당사자는 그 지출한 소송비용의 상환을 폐소당사자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그 절차가 번잡하기 때

문에 실제로 그 청구를 하는 예가 적고 결국 각자 부담이 되고 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승소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비용의 부담을 과하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간소화 해야 한다.

라. 소송비용 보험

소위 소송비용보험은 개인 등이 미리 보험료를 납입하고 실제로 법적 분쟁에 휘말렸을 경우에 변호사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을 보험금으로 보충하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주로 자동차보험 등 의 배상책임보험의 영역에서 보급되는데 그치고 있지만, 최근 일본변호사연합회는 손해보험회사에 의한 소송비용보험의 상품개발·보급 등에 일정한 협력을 하고 있다.

국민의 사법으로의 억세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송비용보험이 보급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며, 계속해서 이와 같은 보험의 개발·보급이 진전되기를 기대한다.

б) 민사법률부조의 확충

민사법률부조제도의 확충에 대해서는 민사법률부조법(2000년 법률제55호)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어 법률상의 근거가 주어지고 또한 국가의 책무로서 그 적정한 운영을 확보하고 그 전전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구미 국가들과 비교하면 민사법률부조 사업의 대상 사건의 범위, 대상자의 범위 등을 한정적이며, 예산규모도 적어 헌법 제32조의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이라는 관점에서는 여전히 불충분하다고 생각된다. 또 형사사법에서의 피의자·피고인의 공적변호제도의 방법과의 관련도 감안하여 운영주체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민사법률부조제도에 대해서는 대상사건·대상자의 범위, 이용자부담의 방

법, 운영주체의 방법 등에 대하여 다시 종합적·체계적인 검토를 가한 다음 더욱 충실하게 해야 한다.

c) 재판소의 편리성 향상

가. 사법의 이용상담창구·정보제공

현재 재판이나 재판외 분쟁해결수단(ADR) 등 분쟁해결수단에 관한 종합적 정보를 원 스톱으로 취득할 수 있는 상담창구(억세스 포인트)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재판소, 변호사회, 지방공공단체, ADR 기관 등에서는 현재 이미 상담창구를 설치해 놓은 경우에는 더욱 충실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또 그와 같은 창구가 없는 경우에는 조속한 설치를 도모해야 한다. 또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각 창구의 네트워크화·정보의 공유를 도모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예를 들면 재판소에서는 스스로의 접수상담기능을 확충하고 상담창구에서 재판절차는 물론 변호사회의 법률상담, 법률부조의 구조 외에 ADR을 포함한 사법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국민이 지방공공단체 등 재판소 외의 상담창구에 가서도 재판소의 접수상담에 관한 정보, 재판절차에 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변호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나아가 지방공공단체에서도 소비생활센터 등의 상담창구에서 상기와 같은 사법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변호사회와 연대하여 변호사 소개를 하는 등의 방안을 실시하기를 기대한다.

나. 재판소 등에 정보통신기술(IT) 도입

각 재판소에서는 각 재판관·직원에 대한 PC

의 배치, 재판부 단위에서의 네트워크에 의한 기일진행 관리정보의 공유나 부동산집행·파산·조정·지불독촉 등의 분야에서의 사건처리 시스템의 개발·도입 등을 추진해 왔다. 또 민사통상 사건의 접수에서 종료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민사재판 사무처리 시스템의 도입이 개발되어 있다. 나아가 새 민사소송법에 의해 민사소송 절차에서의 TV회의시스템 이용 등의 길이 열려 활용되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의 정보통신기술(IT)의 발전은 놀라워서 절차의 효율화, 신속화 및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증대라는 견지에서 소송절차 등에서의 정보통신기술의 적극적 이용을 더욱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재판소의 소송절차, 사무처리, 정보 제공 등의 각 측면에서 데이터베이스,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더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해야 하며, 인터넷에 의한 소송관계 서류의 제출·교환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최고재판소는 향후의 기술혁신에도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도록 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계획을 책정·개선하고 공표해 가야 한다.

다. 야간 및 휴일 서비스

재판소에서의 직무집행은 현재 영장사무 등을 제외하고 법이 정하는 휴일에는 하지 않으며 또 평일에도 일반적으로 통상의 근무시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대도시 등 일부의 가정재판소에서는 오후 5시 이후에도 각지의 실정에 따라 가사심판·가사조정·가사상담·사건의 접수를 하고 있으며, 도쿄·오사카 등의 간이재판소도 마찬가지로 민사조정·접수상담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의 재판소로의 억세스를 확충한다는 견지에서 현행의 야간서비스에 대하여 각 재판소에서 국민에 대한 주지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나아가 야간서비스를 다른 재판소에까지 확대하는 것, 소송사건에 대해서도 야간개정·휴일개정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의 이용동향 등을 주시하면서 국민의 요구 정도 등을 파악 한 다음 관계자의 부담(야간에 출두를 요구받는 상대방 당사자나 재판소 직원의 집무태세 등)을 고려하면서 재판소로의 억세스 확충 견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라. 재판소의 배치

현재의 간이재판소와 지방·가정재판소 지부의 배치는 1987년의 법개정 및 1989년의 최고재판소규칙의 개정에 의해 통합·신설 등의 조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조정은 장래의 인구 및 그 동태, 사건수의 동향, 관내면적, 교통사정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실시된 것이지만 향후 재판소의 편리성을 확보하는 견지에서 재판소의 배치에 대하여 상기의 요소 등을 고려하면서 부단한 정비를 해 가야 한다.

e. 재판외 분쟁해결수단(ADR)의 확충·활성화

a) ADR의 확충·활성화의 의의

사회에서 야기되는 분쟁에는 그 대소, 종류 등에서 다양한 것이 있는데 사안의 성격이나 당사자의 사정에 따라 다양한 분쟁해결방법을 정비하는 것은 사법을 국민에게 가까운 것으로 하여 분쟁의 심각화를 방지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재판외 분쟁해결수단(ADR)은 엄격한 재판절차와는 달리 이용자의 자주성을 살린 해결, 프라이버시나 영업비밀을 유지한 비공개에서의 해결, 간이·신속하고 저렴한 해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의 지식을 살린 세심한 해결, 법률상의 권리의무의 존재 여부에 그치지 않는 실정

에 맞는 해결을 도모하는 등 유연한 대응도 가능하다.

일본에서의 ADR로서는 재판소에 의한 조정절차, 또 재판소 외에서는 행정기관, 민간단체, 변호사회 등의 운영주체에 의한 중재, 조정, 알선, 상담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그렇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일부의 기관을 제외하고 반드시 충분히 기능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 경제활동의 글로벌화·정보화에 따라 국제상사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는 구조의 정비에 대하여 유엔 등에서 검토가 이루어지고 또한 외국에서는 경쟁적 환경 하에서 민간비지니스형의 ADR이 발전하는 등 새로운 동향을 보이고 있어 일본으로서도 조속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국민이 보다 이용하기 쉬운 사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법의 중핵인 재판기능을 확충하여 국민이 더욱 이용하기 쉽도록 각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며, 또한 ADR이 국민에게 있어 재판과 나란히 매력적인 선택사항이 되도록 확충·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각 ADR이 각각의 특징을 살리면서 충실·발전해 가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의 연대를 강화하고 공통적인 제도기반의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

b) ADR에 관한 관계기관 등의 연대 강화

ADR의 확충·활성화에 대해서는 개개 ADR의 성격에 따른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지만 정보제공의 강화, 담당자의 확보, 재정기반의 확립, 제도기반의 정비 등 각 ADR에 대체로 공통되는 횡단적인 과제도 많다. 이 때문에 ADR의 확충·활성화를 향한 재판소나 관계기관, 관계부처 등의 연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의한 연락협의회나 관계부처 등의 연락회의 등의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운용면에서의 구체적인 연대로서 먼저 ADR에 관한 정보제공 면에서의 연대를 강화하는 것이 이용자의 편리 향상, ADR에 대한 인지도·신뢰성 향상의 견지에서 중요하다. 이 때문에 소송, ADR을 포함한 분쟁해결에 관한 종합적인 상담 창구를 충실히 하는 동시에 인터넷상에 ADR의 종합창구 사이트(포털 사이트)를 정비하는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연대를 도모하여 절차, 기관에 관한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를 원스톱으로 국민에게 제공할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담당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연대를 도모하여 ADR의 질적 충실을 살려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담당자, 해결사례, 해결수법 등의 각종 정보에 대하여 프라이버시나 비밀유지도 배려하면서 재판소를 포함한 각 기관이 적극적으로 공개한 다음 포털 사이트의 활용이나 인재의 상호교류 등으로 관계기관간의 정보공유를 촉진해 가야 한다. 그런 다음 ADR의 담당자에게 필요한 지식·기능에 관한 연수 등을 충실히 해야 한다.

c) ADR에 관한 공통적인 제도기반의 정비

ADR의 공통적인 제도 기반에 관하여 먼저 중재법제는 현재도 1890년 제정된 법률이 새 민사소송법 제정 시의 개정작업에서 분리되어 “공시최고절차 및 중재절차에 관한 법률”로서 그대로 남아 있는데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에서의 검토 등 국제적 동향을 보아가면서 중재법제를 조기에 정비해야 한다.

그 때 경제활동의 글로벌화나 국경을 초월한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확대로 국제적인 민·상사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법제도 포함하여 검토해야 한다.

나아가 종합적인 ADR의 제도기반을 정비하는 견지에서 ADR의 이용촉진, 재판절차와의 연대 강화를 위한 기본적인 구조를 규정하는 법률(소위 “ADR 기본법” 등)의 제정도 염두에 두고 필요한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그 때 예를 들면 ADR의 이용을 촉진하는 견지에서 시효중단(또는 정지)효의 부여, 집행력의 부여, 법률부조의 대상화를 가능케 하기 위한 구체적 요건을 검토해야 한다. 또 ADR과 재판소와의 절차적 연대를 촉진하는 견지에서 ADR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판절차를 이용한다거나 또는 그逆이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절차 정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담당자 확보에 관한 제도의 정비로서는 인접법률 전문직종 등 비법조인 전문가의 ADR에서의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변호사법 제72조의 개정의 일환으로 직종별로 실태를 감안하여 그 위상을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이러한 업무가 취급 가능한 것임을 법제상 명확히 해야 한다. 변호사법 제72조에 대해서는 적어도 규제대상이 되는 범위·형태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접법률 전문직종의 업무내용이나 회사형태의 다양화 등 변화에 대응하는 견지에서의 기업법무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그 규제내용을 어떤 형태로건 명확히 해야 한다.

4. 변리사업부영역의 확대 및 전망

1) 민사사법의 국제화

민사사법에서 충실한 심리와 신속한 절차로 대응하는 것은 국제화가 진행되는 현대에서 가장 중요하고 긴요한 과제로 되어 있다.

특히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사건의 충실·신속

화에 대해서는, 각국 모두 지적재산을 둘러싼 국제적 전략의 일부로 다루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바여서 일본으로서도 이러한 동향을 감안하여 정부 전체가 임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이 문제를 다를 필요가 있다.

더욱이 경제활동의 글로벌화나 국경을 초월한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확대로 국제적인 민·상사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에서의 검토 등 국제적인 동향을 주시하면서 국제상사중재를 포함한 중재법제를 정비해야 한다.

2) 변호사(법조인)의 국제화

개인의 활동영역에서도 또한 기업의 활동영역에서도 향후 국제적인 법률문제가 양적으로 증대하고 또 내용적으로 복잡·다양해질 것임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변호사가 국제화시대의 법적 수요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변호사인구의 대폭 확대, 변호사사무소의 집무태세 강화, 변호사의 국제교류 추진, 외국법사무 변호사 등과의 제휴·협동, 법조인 양성 단계에서의 국제화 요청에 대한 배려를 진행함으로써 변호사의 국제화에 대한 대응을 근본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외국법사무 변호사 등에 관한 제도 및 그 운용의 재검토에 대해서는 국제적 논의도 주시하면서 이용자의 관점에서 적당하고 충분하게 검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일본변호사와 외국법사무 변호사 등과의 제휴·협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견지에서 특정 공동사업(현행 제도하에서는 일본

변호사와 외국법사무 변호사가 법령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섭외적 요소를 가지는 법률사무를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 사업이라 되어 있다)의 요건 완화 등을 실시해야 한다. 외국법 사무 변호사에 의한 일본변호사의 고용금지 개정은 국제적 논의를 주시하면서 장차 과제로서 계속 검토해야 한다.

5. 법조인구의 확대

일본의 법조인구에 대하여 1964년 임시사법제도개혁심의회의 의견은 “법조인구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므로, 사법의 적정·원활한 운영과 국민의 법적 생활의 충실·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질적 저하를 가져오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점증을 도모할 것”을 요구했다. 1964년은 사법시험의 최종합격자수가 전후 처음으로 500명을 넘은 해인데, 그 후 그 수가 늘어나지 않아 500명 전후의 숫자가 1990년까지 계속되었다. 그리고 1991년부터 마침내 증가세로 바뀌어 1999년에는 1,000명에 달했다.

법조인구의 총수는 1999년에는 20,730명이었다(덧붙여서 국제비교를 하면 법조인구(1997년)는 일본이 약 20,000명(법조인 1인당 국민의 수는 약 6,300명), 미국이 약 941,000명(동 약 290명), 영국이 약 83,000명(동 약 710명), 독일이 약 111,000명(동 약 740명), 프랑스가 약 36,000명(동 약 1,640명), 연간 신규 법조인자격 취득자수는 미국이 약 57,000명(1996-1997), 영국이 약 1,900명(법정변호사 barrister 1996-1997, 사무변호사 solicitor 1998), 독일이 약 9,800명(1998), 프랑스가 약 2,400명(1997)이다).

그러나 앞으로 국민생활의 다양한 장면에서의 법조인의 수요는 양적으로 증대하는 동시에 질적

으로 점차 다양화, 고도화할 것이 예상된다.

그 요인으로서는 경제·금융의 국제화 진전이나 인권, 환경문제 등의 지구적 과제와 국제범죄 등에 대한 대처, 지적재산권, 의료과오, 노동관계 등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법적 분쟁의 증가, “법의 지배”를 전국에 골고루 실현할 전제가 되는 변호사 인구의 지역적 편재의 시정(소위 “제로 원 지역”의 해소) 필요성, 사회·경제나 국민의식의 변화를 배경으로 하는 “국민의 사회생활상의 의사”로서의 법조인의 역할 증대 등 헤아릴 수가 없다.

이러한 제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법조인구의 대폭적인 증가를 도모하는 것이 긴급과제이다. 사법시험 합격자수는 법조 3자간 협의에 의한 결정을 당연시하는 발상은 이미 과거의 것이며, 국민이 필요로 하는 질과 양의 법조인 확보·향상만이 본질적인 과제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심의회로서는 법조인구에 대하여 계획적으로 가능한 한 조기에 연간 3천명 정도의 신규 법조인의 확보를 목표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002년의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1,200명 정도로 하는 등 현행 사법시험 합격자수의 증가에 곧바로 착수하고 2004년에는 합격자수 1,500명 달성을 목표로 한다.

나아가, 마찬가지로 2004년부터 학생을 받아들일 법과대학원을 포함한 새로운 법조인양성제도의 정비 상황 등을 확인하면서 새 제도로 완전히 변경되는 2010년경에는 새 사법시험의 합격자수를 연간 3,000명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이와 같이 법조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2018년경에는 실제로 근무하는 법조인구가 대략 5만명 규모(법조인 1인당 국민의 수는 약 2,400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실제로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법조인의 수는 사회의 요청에 의거하여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새 사법제도의 합격자 수를 연간 3천명으로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적으로 가능한 한 조기에” 달성해야 할 목표이지 상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6.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혁

1) 새 법조인 양성제도의 정비

- 사법시험이라는 “점”에 의한 선발만이 아니라 법학교육, 사법시험, 사법연수를 유기적으로 연대시킨 “프로세스”로서의 법조인 양성제도를 새로 정비해야 한다. 그 중핵을 이루는 것으로 법조인 양성으로 특화된 교육을 하는 법과대학원을 설립해야 한다.
- 법과대학원은 2004년 4월부터 학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비되어야 한다.

2) 사법시험

- 사법시험을 법과대학원의 교육내용에 입각한 새로운 것으로 바꾸어야 한다.
- 새 사법제도와 법과대학원에서의 교육내용의 관련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 적격 인정을 받은 법과대학원의 수료자에게는 새 사법시험의 수험자격이 인정되도록 해야 한다.
- 경제적 사정이나 이미 사회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법과대학원을 거치지 않는 자에게도 법조인 자격 취득을

위한 적절한 길을 확보해야 한다.

- 적격인정을 받은 법과대학원 수료자의 새 사법시험 수험은 3회 정도의 시험회수 제한을 과해야 한다.
- 새 사법시험은 2005년도로 예상되는 법과대학원의 첫 수료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험부터 실시해야 한다.
- 새 사법시험 실시 후에도 5년 정도는 현행 사법시험을 병행하여 실시해야 한다.
- 현행 사법시험의 합격자수 제한제도는 현행 사법시험 합격자수가 1,500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2004년도부터 폐지해야 한다.

3) 인접법률 전문직종의 활용

- 소송절차에서 인접법률 전문직종 등이 가지는 전문성을 활용하는 견지에서,
 - 법무사에 대한 간이재판소에서의 소송대리권에 대해서는 신뢰성이 높은 능력담보조치를 강구한 다음 이를 부여해야 한다. 또한 간이재판소의 사물관할을 기준으로 하여 조정, 즉결 화해사건의 대리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부여해야 한다.
 - 변리사에 대한 특허권 등의 침해소송(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되어 있는 사건에 한 한다)에서의 대리권에 대해서는 신뢰성이 높은 능력담보조치를 강구한 다음 이를 부여해야 한다.
 - 세무사에 대하여 세무소송에서 재판소의 허가를 얻지 않고 보좌인으로서 변호사인 소송대리인과 함께 재판소에 출두하여 진술할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 행정서사, 사회보험노무사, 토지가옥조사사 등 기타 인접법률전문 직종 등에 대해서는 그 전문성을 소송의 장에서 활용할

필요성과 상응하는 실적 등이 명백해진 다음에 출정진술 등 일정한 범위, 형태의 소송절차에 대한 관여방법을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향후의 과제라 생각된다.

- ADR을 포함한 소송절차 이외의 법률사무에 관하여 인접법률 전문직종 등이 가지는 전문성 활용을 도모해야 한다. 구체적인 관여 방법에 대해서는 변호사법 제72조의 개정의 일환으로 직종별로 실태를 감안하여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법제상으로 명확히 정해야 한다.
- 변호사법 제72조에 대해서는 적어도 규제대상이 되는 범위, 형태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접법률 전문직종의 업무 내용과 회사형태의 다양화 등의 변화에 대응하는 견지에서의 기업법무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그 규제내용을 어떤 형태로건 명확히 해야 한다.
- 원 스텝 서비스(종합적 법률·경제관계 사무소) 실현을 위하여 변호사와 인접법률 전문직종 등에 의한 협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변호사법 제72조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보수를 얻을 목적으로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서사, 사회보장 노무사, 토지가옥조사사 등의 소위 인접법률 전문직종은 각각의 業法에 정해진 바에 따라 한정적인 법률사무를 다루고 있다.

변호사와 인접법률 전문직종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변호사 인구의 대폭적인 증가와 제반의 변호사 개혁이 현실화되는 장래에 각 인접법률 전문직종 제도의 취지나 의의 및 이용자의 편리와 그 권리보호의 요청 등을 감안하여 법적 서비스

의 담당자의 위상을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국민의 권리옹호에 불충분한 현상을 곧바로 해소한다는 필요성을 감안하여 이용자의 관점에서 당면한 법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소송절차에서는 인접법률 전문직종 등이 가지는 전문성을 활용하는 견지에서 적어도 법무사의 간이재판소에서의 소송대리권(간이재판소의 사물관할을 기준으로 하여 조정·즉결화해사건의 대리권에 대해서도 같음), 변리사의 특허권 등의 침해소송(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이 되어 있는 사건에 한한다)에서의 대리권에 대해서는 신뢰성이 높은 능력담보조치를 강구한 다음 이를 부여해야 한다. 세무사에 대해서는 세무소송에서 재판소의 허가를 얻지 않고 보좌인으로서 변호사인 소송대리인과 함께 재판소에 출두하여 진술하는 권한을 인정해야 한다(이 점에 대해서는 제151회(2001년). 국회에서의 세무사법 개정법안의 가결·성립에 의해 입법조치가 이루어졌다).

행정서사, 사회보험노무사, 토지가옥조사사 등 기타 인접법률 전문직종에 대해서는 그 전문성을 소송의 장에서 활용할 필요성이나 상응하는 실적 등이 명백해진 후에 出廷진술 등 일정한 범위·형태의 소송절차에 관여하는 방법을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향후의 과제라 생각된다.

또 ADR을 포함한 소송절차 외의 법률사무에 관하여 인접법률 전문직종 등이 가지는 전문성의 활용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다. 구체적인 관여 방법에 대해서는 후술하는 변호사법 제72조의 개정의 일환으로서 직종별로 실태에 입각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 때 당해 법률사무의 성질과 설정, 각 직종의 업무내용·전문성이나 그 설정, 그 고유의 직무와 법률사무와의 관련성, 법률사무에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그 위상

을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이러한 업무가 취급 가능하다는 것을 법제상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또한 변호사법 제72조에 대해서는 적어도 규제대상이 되는 범위·형태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접법률 전문직종의 업무내용이나 회사형태의 다양화 등 변화에 대응한다는 견지에서 기업법무 등과의 관계도 포함하여 그 규제내용을 어떤 형태로건 명확히 해야 한다.

변호사와 인접법률 전문직종 기타 전문자격자에 의한 협동에 대해서는 의뢰자의 편의 향상을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원 스텝 서비스(종합적 법률경제관계사무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그 실효를 거두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이 때 수지공동형이나 상호고용형 등의 형태 등 소위異업종공동사업의 용인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야 한다.

4) 재판소조사관 제도의 확충

현행 재판소조사관 제도에 대해서는 일부의 전문적 사건에 관하여 도쿄나 오사카 등 일부의 지방재판소, 고등재판소에서 법조인 자격을 가지지 않은 조사관이 활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법조인 자격을 가지는 조사관에 대해서는 지방재판소 및 고등재판소를 통틀어 두어져 있지 않는 상황에 있다. 이러한 현상을 감안하여 기본이 튼튼한 재판소를 만드는 동시에 재판소 외의 자에게 재판소 내의 경험을 쌓게 하기 위한 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관점에서 법조인 유자격자 및 학식경험자 등의 인재를 재판관의 보좌로 당해 당사가 담당하는 사건 전반에 걸쳐 심리나 재판을 돋는, 소위 재판관에 달린 조사관으로 임용하는 가능성

을 포함하여 조사관제도 확충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7. 司改委에 대한 일본 특허청의 대응

특허청 워킹그룹(능력담보조치에 관한 워킹그룹)

특허청은 사개위 보고서에 의해 「변리사의 침해소송대리」를 위해 특허청 총무부장의 사적자문 기관으로 「능력담보조치에 관한 워킹그룹(전 고등재판소 판사를 좌장으로 하고 東京地裁 현직판사, 최고재판소, 전 高裁판사, 학자, 知財協대표, 일본변리사연합회대표, 일본변리사회 대표로 구성)」 만들어 검토에 들어갔다.

일본 변리사회안은 “능력담보조치로서의 연수제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능력담보의 범위는 일본변리사법 제5조의 보좌인의 업무범위이고, 능력담보연수를 필수연수로 하는 경우에 민법, 민소법의 기초를 대학 등에 위탁하여自主研修로 하고, 연수내용은 소송실무강의와 起案연습 등으로 하여 강의를 15시간, 연습을 54시간 약 70시간 등으로 한다고 한다.

일본 사개위 의견서에는 변리사가 침해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조건을 ①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이 된 사건과 ② 신뢰성이 높은 능력담보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워킹그룹의 1회와 2회 회합에서 문제가 된 것은 변리사 단독으로 出廷하는 경우에만 문제가 되어 그 범위에 대해서는 논의없이 끝났다고 한다³⁾.

일본 변리사회의 표준은 ①조건하에서는 침해소송대리는 변호사와 연대하는 경우에는 出廷도

3) 久保 司, “侵害訴訟代理の能力擔保措置について” パテント vol.54 No.10 p.54

공동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단독출정 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나 재판소가 난처한 입장을 표명했다고 한다⁴⁾.

사개위 의견서에는 지적재산권의 침해소송이 특히 신속성이 요구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이용자 관점에서 법적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변리사의 기술적지식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고, 그 결과로 서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주는 취지라고 이해하고, 또 변리사의 기술적 지식을 활용하는 것은 과학기술에 한하지 않으며, 의장 상표 등의 변리사가 갖추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에 관하여 주장, 심문, 증거조사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그에 상응하는 연수를 상정하고 있다고 한다⁵⁾.

이를 위해 변리사회장단은 변호사와 연대하여 하는 경우에도 소송준비나 공동출정의 경우에도 대등한 대리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소송실무 능력을 갖추도록 하여야한다.

또, 변리사가 지금까지 보좌인으로서 활약하여 온 실적을 가진 변리사에게는 연수과목의 면제나 시험 면제 등의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한다.

연수의 실시주체는 일본변리사회이고, 강사는 재판소의 현직판사가 어렵다고 하니 변호사에게 의뢰하며, 비용은 수익자부담하는 경우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과제이다.

하여 부처 및 특정단체의 이기주의에 벗어나 거 국적인 차원에서 연구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일본 사법개혁의 추진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로 연구·검토해야 할 문제로서는 일본과 달리 전문법원인 특허법원이 있으면서도 특허침해소송은 다르지 않고, 심결취소소송만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침해소송을 특허법원으로 관할을 집중 시켜 명실상부한 특허전문법원이 되어야 할 것이고, 둘째는 변리사자격을 가진 자가 사법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동일한 과목을 면제하는 방법과 대학원에서 지적재산권법을 전공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등도 변리사시험에서 취득과목에 대하여 면제하여 주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셋째는 특허법 제186조 제1항, 실용신안법 제56조, 의장법 제75조, 상표법 제86조 제2항의 특허소송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반도체 회로에 관한 것이나 IT분야 등 전문적인 기술분야도 전문법원인 특허법원에 관할하도록 하되, 변리사 등의 전문자격증 소지자에게 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할 수 있다.

발행 2002. 1

8. 끝으로

일본은 법률시장의 개방을 대비하여 지적재산권법 분야뿐만 아니라 사법전문야에 걸쳐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도 법률시장의 개방에 대비

4) 久保 司, “侵害訴訟代理の能力擔保措置について” パテント vol.54 No.10 p.54

5) 久保 司, “侵害訴訟代理の能力擔保措置について” パテント vol.54 No.10 p.54